의 안 번 호

2354

【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O 제 출 일 자 : 2024. 11. 11.(월)

O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O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11. 11.(금)

○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12. 3.(화)

2. 제안이유

O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 기반 조성과 자활참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2025년 자활기금 운용계획(안)에 대하여 심의·의결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O 기금조성 현황

(단위: 천원)

2024년도 말 조성액@	2025년도 조성계획			2025년도 말 조성
	수입(6)	지출©	조성액 @=b-©	액()=(0)+(3)
2,032,421	83,060	161,156	△78,096	1,954,325

O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편성목	수입액	수입내역
합계	83,060	
(216-01) 공공예금이자수입	67,000	기금 적립금 및 운용통장 이자수입
(216-02) 융자금회수이자수입	2,560	사업단 융자금 이자 수입
(224-07) 그외수입	2,300	내일키움 통장 반환금 등
(713-01) 민간융자금회수수입	11,200	융자금 원금 및 이자 수입

O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편성목	수입액	수입내역
합계	161,156	
(201-02) 공공운영비	156	등기송달료 등
(301-02) 사회보장적수혜금	7,200	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
(307-11) 사회복지사업보조	53,800	맞춤형 직무교육, 우수참여자 힐링캠프 사업 등 추진
(501-01) 융자금 대여	100,000	자활사업단 융자금 대여

4. 근거법규

- O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제13조
- O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3조 및 제14조

5. 검토의견

O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복지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근 거 법 규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 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 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- 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 -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 -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13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,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.<개정 2021.12.30.>

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<개정 2021.12.30.>

- 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- 2.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
- 3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때 회계 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제14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)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운용심의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14.12.29><개정 2021.12.30.>
 - 1.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<개정 2016.12.30>
 - 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<개정 2016.12.30>
 -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4.<삭제 2016.12.30>
 - 5.<삭제 2016.12.30>
 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행한다.<개정 2016.12.30>
- ③ 구청장은 기금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